



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

채원영 연구원

-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.
- 개선방안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·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대출모집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, 금융회사는 업무위탁계약 해지 이외에도 수수료 감액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게 됨.
 -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중요사항¹⁾에 대한 설명·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였음.
 -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모집할 때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고, 광고물에도 이 내용을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음.
 -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과 의무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,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해 수수료 감액, 벌점부과, 벌점 누적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게 됨.
- 또한 업권별로 개설되어 있는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임.
 - 현재는 각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권의 모집인만 조회할 수 있으나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부업을 포함한 전 업권의 대출모집인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음.
 - 이에 따라 미등록 모집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그리고 높은 모집수수료에 따른 서민대출의 고금리화 방지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업권별, 회사별 평균 수수료율을 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할 예정임.

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4/18)

1) 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활동을 한다는 점과 대출 여부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담당한다는 점 등이 있음.